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와 칠레공화국 교육부 및 국가과학 기술연구위원회 간의 장학금 및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대표자 안병만, 77-6 Sejongn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와 칠레공화국 교육부(대표자 Ms. Monica Jimenez, 소재지 Alameda 1371, Santiago, Chile),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연구위원회(대표자 Ms. Maria Elena Boisier, 소재지 Canada 1308, Providencia, Chile) (이하 "서명자"라 함)은 본 MOU에 서명하기로 합의하며, 다음의 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우의와 탁월한 상호간 관계를 인지하면서,

칠레공화국 교육부가 2008년 법령 664호에 의거하여 200주년 기념 BECAS CHILE 프로그램 (이하 "BECAS CHILE"이라 함)에 의한 장학금의 수여 규칙을 제정하여, 장학금 및 인적자본에 대한 고등훈련 신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대학원 교육을 원하는 우수 칠레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점을 고려하고,

서명자가 양국의 교육개발 및 우수한 개인의 훈련에 있어 공동의 관심을 가짐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칠레공화국 교육부, 국가과학기술연구위원회 인적자본 프로그램" (이하 "프로그램"이라 함)의 설치 및 동 프로그램이 BECAS CHILE와 국가과학기술연구위원회에 의하여 관리되어짐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양해한다.

제1조

목적

1.1 본 양해각서는 BECAS CHILE 세칙에 의하여 선발된 칠레의 개인들이 대한민국의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대학원 과정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장학프로그램의 실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프로그램은 한-칠레간 고등교육분야 협력의 촉진 및 칠레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의 개발, 우수한 학생을 위한 평등한 교육권 제공 및 유학 프로그램 수의 증가를 목표로 한다.

1.2 본 프로그램은 칠레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의 범위와 질의 향상, 과학기술 연구 및 혁신의 필요성에 강조점을 둔다. 대한민국의 대학에서 제공되는 모든 학문분야는 칠레의 장학금 수혜자에게 제공가능하다.

제 2조

수혜자 수, 지원자 선발 및 대한민국 대학 입학

2.1 매년 칠레공화국 교육부는 BECAS CHILE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하여 BECAS CHILE 세칙에 의거하여 특정되지 않은 수의 장학금을 대한민국의 대학에서 대학원과정의 연구를 희망하며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2.2 대한민국의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혜자의 수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수여될 장학금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a) 희망하는 유학자로 대한민국의 대학을 우선적으로 포함한 지원자의 수
- b) BECAS CHILE 세칙에 의하여 설정된 장학금 수여 요건을 충족한 지원자의 명수
- c) BECAS CHILE 세칙에 의한 요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의하여 평가되고 선정되어진 지원자의 수
- d) 대한민국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 대학들에서 설정된 입학 및 선발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원자의 수
- e) 대한민국의 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지원자의 수

2.3 BECAS CHILE의 지원, 평가, 선발절차는 BECAS CHILE의 세칙에 규정된 방침 및 원칙에 따라 공개되며, 능력을 본위로 한다.

2.4 칠레공화국 교육부는, BECASE CHILE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하여, BECAS CHILE의 세칙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대학에서 수학하기 위한 지원, 평가, 선발 및 장학금 자금의 수여에 있어서 완전한 권한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대학들은 자신들의 지원, 평가 및 선발절차 그리고 칠레후보자의 입학을 수락 혹은 거부함에 있어서 완전한 권한을 가진다.

2.5 본 양해각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대학과 칠레정부 기관 혹은 대학 간에 이미 존재하는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3조

학업 프로그램

3. 본 양해각서에 의거하여, 다음의 학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a)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 동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칠레의 우수한 대학졸업자, 학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칠레 교육부는, BECAS CHILE 및 CONICYT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수여한다.

- ◆ 프로그램의 시작일로부터 최대 2년간의 석사과정에 대한 매년의 장학금
- ◆ 프로그램의 시작일로부터 최대 2년 기간의 박사과정에 대한 매년의 장학금
- ◆ 프로그램의 시작일로부터 최대 2년간의 박사후 과정에 대한 매년의 장학금

- ◆ 칠레에서 박사과정을 수행하는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대학 및 우수기관에서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최대 2년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년의 "샌드위치" 장학금
- ◆ 칠레에서 박사과정을 수행하는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대학 및 우수기관에서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최대 10개월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년의 해외 인턴십 장학금

b) 대한민국 대학은 칠레 대학과의 교환 프로그램의 증진에 협력한다.

제4조

장학 프로그램의 자금제공 및 이행, 서명자에 대한 혜택 및 책임

4.1 대한민국의 대학에서의 학업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칠레 교육부는 BECAS CHILE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하여 각각의 수혜자에게 BECAS CHILE의 세칙에 따라 다음의 혜택을 수여한다.

a) 수혜자 및 적용 가능한 경우 호스트 국가의 이민법에 따른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칠레의 수혜자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에서부터 대한민국의 학업 수행지까지의 이코노미 클래스 편도 항공편 및 프로그램 종료시점의 이코노미 클래스 귀국 항공편

- b) 모든 감면 및 할인이 -적용 가능한 경우- 공제되어진 수혜자의 대한민국에서의 학업 프로그램에 대한 총 학비 및 납부금에 상응하는 총 금액. 동 혜택은 박사후 과정생에게는 적용되어지지 않음
- c) BECAS CHILE 세칙에 따라 정해진 금액에 상당하는 대한민국에서의 학업기간 동안 매달의 지원금. 이는 수혜자가 대한민국의 대학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중 지불되어짐.
- d) BECAS CHILE에서 정한 금액 및 조건에 따른 수혜자의 배우자가 동반하는 기간 중의 매달의 지원금. 박사과정 인턴십은 동 혜택의 수혜자격이 없음
- e) BECAS CHILE에서 정한 금액 및 조건에 따른 수혜자의 18세 이하 자녀가 동반하는 기간 중의 매달의 지원금. 박사과정 인턴십 수혜자는 동 혜택의 수혜자격이 없음
- f) BECAS CHILE에서 정한 금액 및 조건에 따른 대한민국 도착 및 귀국시점 각 1회의 정착지원금. 박사과정 인턴십은 동 혜택의 수혜자격이 없음
- g) BECAS CHILE에서 정한 금액 및 조건에 따른 각 수혜자에 대한 1회의 연간 도서 및 학습재료 구입비
- h) BECAS CHILE에서 정한 금액 및 조건에 따른 수혜자 및 대한민국에 동거하는 자녀 및 배우자에 대한 연간의 의료보험비
- I) BECAS CHILE의 세칙에 따라, 필요하며 적용가능한 경우, 대한민국과 칠레에서 어학과정과 연계된 혜택의 수여.

박사과정 인턴십 및 박사후 과정은 동 혜택의 수혜자격이 없음

j) 산전 및 산후 휴가기간의 최대 4개월까지의 월간 지원금의 연장. 박사과정 인턴십 장학금 수혜자는 혜택의 수혜자격이 없음

4.2 대한민국 대학은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과 조건을 부과하기 위하여 칠레 교육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개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4.3 서명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관련 국내법, 규정 및 세칙을 준수한다. 본 양해각서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들은 호스트 국가의 법과 규범을 준수한다.

4.4 본 양해각서에 참여하는 모든 수혜자들은 호스트 국가의 법과 규범을 준수한다.

제5조

추진위원회

5.1 서명자는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본 양해각서를 이행하고 감독하며, 본 양해각서의 이행과 관련한 평가 및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위원은 최소 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양 서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견교환으로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양 서명자로부터 지명된 대표자로 구성되며 적어도 (1) 1인의 칠레 교육부의 대표자; (1)

1인의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표자; (1) 최소 1인의 칠레 외교부의 대표자; (1) 최소 1인의 대한민국 외교부의 대표자; 최소 1인의 대한민국 대학의 대표자; BECAS CHILE 프로그램의 집행간사 또는 그/그녀에 의하여 지명된 자; 최소 1인의 회장으로부터 지명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표자

5.2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서명자간 최소 30일 전에 공동으로 결정한 바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칠레에서 개최된다.

제6조

기간, 유효성, 수정, 종결 및 분쟁의 해결

6.1 본 양해각서는 서명일로부터 5년간 지속되며, 서명자의 모든 내부적 행정절차가 이행된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 양해각서는 서명자 상호간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추가 5년간 갱신될 수 있다.

6.2 서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양해각서는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모든 수정사항은 서명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날짜에 효력을 발생한다. 상기 언급된 바에 불구하고, 모든 서명자들의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6.3 서명자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본 양해각서의 종료일 이전에 이를 종료할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한 6개월 이전에 이를 서면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4 서명자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본 양해각서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적어도 30일 이전에 이 사실이 통보되도록 한다. 만약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서명자가 이를 30일 이내에 수정할 경우, 본 양해각서는 유효하다.

6.5 상호간의 합의 또는 서명자 중 한 측의 의무불이행에 의한 본 양해각서의 조기종료는 현 양해각서에 의하여 시작되고 아직 종료일의 도달에 의해 종료되지 않은 행위, 또는 4조의 조항에 의거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혜택은 개별 학업 프로그램의 종료일까지 제공되며, 책임있는 서명자는 동 프로그램의 종료일까지 재정지원을 유지한다. 또한, 서명자가 동의하고 종료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다른 혜택도 해당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6.6 본 양해각서의 해석 및 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서명자간 협의와 협상 또는 상호간 결정한 방식에 의하여 우호적이며 신속하게 해결한다. 만약 서명자가 논쟁이나 분쟁을 비공식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명자는 동 사안을 중재에 맡긴다.

6.7 본 양해각서의 어떠한 조항이 무효화되거나, 효과가 없어지거나, 또는 시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서명자는 현재의 양해각서를 수정하여 무효화되거나,

효과가 없어지거나, 또는 시행할 수 없게 된 조항을 서명자의 의도에 가장 잘 부합하는 유효하고 시행가능한 조항으로 수정할 것을 공동으로 결정한다. 삭제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6.8 서명자는 사전에 상대 서명자의 동의가 없는 한, 본 양해각서상의 권리와 의무를 상실하지 않는다.

제7조

법적 실체 및 양해각서의 언어

7.1 내무부 고등 포고령 546조(2008.4.18 발효)에 의거하여 Mónica Jiménez de la Jara가 칠레공화국 교육부를 대표함

7.2 행정안전부 임명 사령장 958호 (시행 2008.8.6)에 의거하여 안병만 장관이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를 대표함

7.3 교육부 고등 포고령 2456 조 (2009.11.3 발효)에 의거하여 Ms. Maria Elena Boisier가 칠레국가과학기술연구위원회를 대표함

7.4 본 양해각서는 한국어, 스페인어, 그리고 영어로 세 부작성되었다. 세 양해각서는 모두 등등하게 유효하며, 서명자는 세 부가 모두 내용, 취지, 및 해석에 있어 동등함을 인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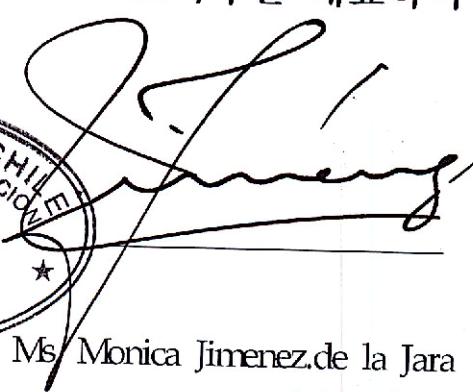
본 양해각서의 증거로서, 하단의 도시와 일자에 양측대표가 서명을 한다.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를
대표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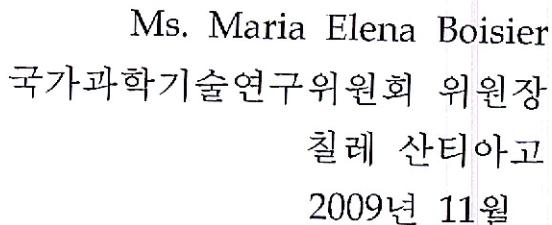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대한민국 서울
2009년 11월

칠레공화국
교육부를 대표하여



Ms. Monica Jimenez de la Jara
교육부 장관
칠레 산티아고
2009년 11월

국가과학기술
연구위원회를 대표하여



Ms. Maria Elena Boisier
국가과학기술연구위원회 위원장
칠레 산티아고
2009년 11월